2013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강재현	561224-****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	류			
종류	사업자반	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	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동부화재해상보	.험 (주)	다이렉트운전자13				
보장성	201-81-45	5***	96A13374	6762	561224-****	강재현	28,000
	삼성화재해상보	험 (주)	무배당누구니	· - - - - - - - - - - - - - - - - - - -			
보장성	202-81-45	5***	5026203654	10000	561224-*****	강재현	360,000
	삼성화재해상보험 (주)		애니카 다이렉트(개인용)				
보장성	202-81-45	5***	1135993432	20000	561224-*****	강재현	655,710
	삼성화재해상보험 (주)		애니카 다이렉트	애니카 다이렉트(개인용)			
보장성	202-81-45	5***	1125762125	50000	561224-*****	강재현	12,030
	삼성화재해상보험 (주)		올라이프보장(0804.6)				
보장성	202-81-45	5***	50804987740000		900730-*****	강현호	609,240
	인별합계금액		1,6		1,664,980		

1. 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나이요건 제한 있음)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2. 공제한도 : 보장성 보험료(연 100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연 100만원)





2013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인순	621210-*****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	류			
종류	사업자반	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	자3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영업소)		(무)New 치아안심보험1308(F형/				
보장성	116-84-00***		LTD126005	4352	621210-*****	이인순	110,670
	한화생명보험	(주)	(무)명품	암			
보장성	116-81-12	L***	1580886	95	621210-*****	이인순	415,680
	동부화재해상보	험 (주)	범 (주) 다이렉트운전자12				
보장성	201-81-45***		238124236	5291	621210-****	이인순	180,000
	삼성생명보험 (주)		무)삼성생명(무)삼성생명암보험			
보장성	104-81-26***		1500104310008		621210-****	이인순	90,000
	삼성화재해상보	험 (주)	무배당80평생3				
보장성	202-81-45	5***	50256631630000		621210-*****	이인순	1,148,400

1. 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나이요건 제한 있음)을

-2-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2. 공제한도 : 보장성 보험료(연 100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연 100만원)



2013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인순	621210-*****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	류			
종류	사업자반	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	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삼성화재해상보험 (주)		무배당누구니	무배당누구나만족4			
보장성	202-81-45***		5026484795	50000	621210-*****	이인순	180,000
	삼성화재해상보	.험(주)	무배당삼성의	료보험II			
보장성	202-81-45	5***	501622208	50000	621210-*****	이인순	564,000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무배당하이퍼펙트종합보험 (HI080				
보장성	102-81-32***		L20094475	5866	920624-*****	강현태	1,362,480
	삼성화재해상보험 (주)		삼성Super	보험			
보장성	202-81-45	5***	6060006098	30000	561224-*****	강재현	1,956,960
	동부화재해상보험 (주)		스마트비즈1107				
보장성	201-81-45	5***	886110040344		621210-*****	이인순	200,000
	인별합계금액						6,208,190

1. 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나이요건 제한 있음)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2. 공제한도 : 보장성 보험료(연 100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연 100만원)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강재현	561224-****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납입금액 계	
3-09-37*	해***	일반	1,500	
6-05-96*	조***	일반	2,500	
0-90-20*	사****	일반	7,200	
5-90-73*	□ *****	일반	650,000	
9-98-01*	박****	일반	17,500	
5-09-27*	기***	일반	45,940	
3-96-07*	최****	일반	39,400	
4-90-35*	서*****	일반	4,300	
0-08-81*	샛***	일반	155,900	
0-05-30*	굿****	일반	7,160	
0-08-87*	사*****	일반	7,500	
0-96-05*	김*****	일반	30,000	
6-01-37*	홍****	일반	2,580	
0-15-79*	O*****	일반	38,50	
0-92-06*	서*****	일반	4,300	
5-04-35*	라*****	일반	6,100	

1.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구입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

2.공제한도 : 본인·장애인·만65세 이상(한도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강재현	561224-****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납입금액 계
0-82-04*	(*****	일반	338,13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1,358,51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1,358,510

1.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구입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

2.공제한도 : 본인 · 장애인 · 만65세 이상(한도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

일련번호: 20160525-46377095





-5-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강현호	900730-*****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납입금액 계
6-90-14*	난******	일반	4,900
6-32-01*	지***	일반	1,6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6,5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6,500

1.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구입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

2.공제한도 : 본인 · 장애인 · 만65세 이상(한도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강현태	920624-****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납입금액 계
0-91-57*	연*****	일반	49,200
1-45-14*	선***	일반	2,300
6-23-40*	더****	일반	2,800
0-90-20*	٨ <u></u>	일반	8,300
0-92-19*	강****	일반	5,300
6-01-37*	홍****	일반	2,28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70,18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70,180

1.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구입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

2.공제한도 : 본인 · 장애인 · 만65세 이상(한도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인순	621210-*****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납입금액 계
7-09-82*	가***	일반	6,200
8-82-08*	동******	일반	690,670
6-30-00*	人 ├*****	일반	1,500
0-90-64*	Of*****	일반	38,900
0-91-54*	은****	일반	85,600
6-23-40*	Fl****	일반	2,800
0-90-78*	스******	일반	25,000
0-92-19*	강****	일반	4,500
5-91-88*	경*****	일반	3,919,060
8-33-62*	上****	일반	42,200
6-19-57*	홈*****	일반	67,640
1-90-84*	₾****	일반	6,530,48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11,414,55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11,414,550

1.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구입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

2.공제한도 : 본인 · 장애인 · 만65세 이상(한도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강현호	900730-*****

■ 교육비 지출내역 (단위:원)

교육비종류	학교명	사업자번호	납입금액 계
대학교	***대학교	**6-82-00***	6,180,000
인별합계금액			6,180,000

- 1. (아이사랑카드)가 기재된 자료는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정부지원금 제외)이며, 아이사랑카드 외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기 바람
- 2. 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위탁아동(나이제한 없음)을 위해 실제 지출한 교육비부담액
- 3. 공제한도 : 근로자 본인·장애인특수교육비(한도없음),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연300만원), 대학생(연 900만원),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강재현	561224-*****

■ 신용카드 사용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
202-81-45***	삼성카드주식회사	일반	10,817,570
202-81-45***	삼성카드주식회사	전통시장	424,830
202-81-45***	삼성카드주식회사	대중교통	568,500
202-81-14***	주식회사 하나은행	일반	14,000
101-86-61***	(주) KB국민카드	일반	1,550,620
101-86-61***	(주) KB국민카드	전통시장	114,800
101-86-61***	(주) KB국민카드	대중교통	143,350
일반 인별합계금액			12,382,190
전통시장 인별합계금액			539,630
대중교통 인별합계금액			711,850
인별합계금액			13,633,670

1.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직계존비속·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30%)(직불카드 거래 중 후불교통사용금액 등 일정 기간 경과 후 카드사에 대금을 납부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분류됨)

2.공제한도: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인순	621210-*****

■ 신용카드 사용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
120-81-54***	롯데카드 주식회사	일반	1,121,190
120-81-54***	롯데카드 주식회사	대중교통	14,600
202-81-45***	삼성카드주식회사	일반	1,298,190
202-81-45***	삼성카드주식회사	대중교통	8,550
202-81-48***	신한카드 주식회사	일반	14,293,698
202-81-48***	신한카드 주식회사	전통시장	215,390
202-81-48***	신한카드 주식회사	대중교통	442,350
213-86-15***	현대카드주식회사	일반	0
101-86-61***	(주) KB국민카드	일반	14,236,290
101-86-61***	(주) KB국민카드	전통시장	34,800
101-86-61***	(주) KB국민카드	대중교통	162,850
일반 인별합계금액			30,949,368
전통시장 인별합계금액			250,190
대중교통 인별합계금액			628,350
인별합계금액			31,827,908

1.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직계존비속·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30%)(직불카드 거래 중 후불교통사용금액 등 일정 기간 경과 후 카드사에 대금을 납부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분류됨)

2.공제한도: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강재현	561224-*****

■ 직불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
214-81-37***	비씨카드 (주)	일반	544,920
214-81-37***	비씨카드 (주)	전통시장	40,970
일반 인별합계금액			544,920
전통시장 인별합계금액			40,970
대중교통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585,890

1.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 직계존비속 • 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30%)(직불카드 거래 중 후불교통사용금액 등 일정 기간 경과 후 카드사에 대금을 납부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분류됨)

2.공제한도: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

-12-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강현호	900730-*****

■ 직불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
214-81-37***	비씨카드 (주)	일반	61,400
101-83-02***	우정사업본부	일반	4,217,670
101-83-02***	우정사업본부	전통시장	22,000
101-83-02***	우정사업본부	대중교통	101,700
일반 인별합계금액			4,279,070
전통시장 인별합계금액			22,000
대중교통 인별합계금액			101,700
인별합계금액			4,402,770

1.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 직계존비속 • 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30%)(직불카드 거래 중 후불교통사용금액 등 일정 기간 경과 후 카드사에 대금을 납부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분류됨)

2.공제한도: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

-13-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강현태	920624-*****

■ 직불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
214-81-37***	비씨카드 (주)	일반	6,750,270
214-81-37***	비씨카드 (주)	전통시장	86,000
일반 인별합계금액			6,750,270
전통시장 인별합계금액			86,000
대중교통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6,836,270

1.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 직계존비속 • 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30%)(직불카드 거래 중 후불교통사용금액 등 일정 기간 경과 후 카드사에 대금을 납부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분류됨)

2.공제한도: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인순	621210-*****

■ 직불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
104-86-39***	농협은행 주식회사	일반	65,000
일반 인별합계금액			65,000
전통시장 인별합계금액			0
대중교통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65,000

1.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 직계존비속 • 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30%)(직불카드 거래 중 후불교통사용금액 등 일정 기간 경과 후 카드사에 대금을 납부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분류됨)

2.공제한도: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강재현	561224-*****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월별 공제	l대상금액		
ᅯ그연스즈	조근	1월	2월	3월	4월	공제대상금액
현금영수증	종류	5월	6월	7월	8월	공제대상금액 합계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0	0	0	0	7,500
		7,500	0	0	0	
일반 인별합계·	일반 인별합계금액 7,500					
전통시장 인별합	시장 인별합계금액 0					
대중교통 인별합	계금액					
인별합계금역	객					7,500

1.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직계존비속·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30%)(직불카드 거래 중 후불교통사용금액 등 일정 기간 경과 후 카드사에 대금을 납부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분류됨)

2.공제한도: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강현호	900730-*****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월별 공제대상금액			
친그어스즈		1월	2월	3월	4월	공제대상금액
현금영수증	종류	5월	6월	7월	8월	공제대상금액 합계
		9월	10월	11월	12월	
		489,020	44,890	95,580	187,700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0	0	24,340	23,290	1,254,540
		360,380	0	9,900	19,440	
일반 인별합계	인별합계금액 1,254,540					
전통시장 인별합	계금액	0				
대중교통 인별합	계금액	0				
인별합계금역	객					1,254,540

1.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 직계존비속 • 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30%)(직불카드 거래 중 후불교통사용금액 등 일정 기간 경과 후 카드사에 대금을 납부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분류됨)

2.공제한도: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강현태	920624-*****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월별 공제대상금액			
친그연스즈		1월	2월	3월	4월	공제대상금액
현금영수증	종류	5월	6월	7월	8월	공제대상금액 합계
		9월	10월	11월	12월	
		30,830	0	41,830	35,780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77,780	35,780	46,780	51,730	575,630
		40,730	116,430	40,730	57,230	
일반 인별합계·	일반 인별합계금액 575,630					575,630
전통시장 인별합	선통시장 인별합계금액 (0
대중교통 인별합	계금액					0
인별합계금역	객					575,630

1.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직계존비속·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30%)(직불카드 거래 중 후불교통사용금액 등 일정 기간 경과 후 카드사에 대금을 납부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분류됨)

2.공제한도: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인순	621210-*****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월별 공제대상금액				
현금영수증	종류	1월	2월	3월	4월	공제대상금액 합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156,167	123,970	151,970	51,970	1,010,710	
	51,970	51,970	51,970	51,970		
		51,970	95,770	69,203	101,810	
일반 인별합계금액 1,010,710						
전통시장 인별합계금액 0						
대중교통 인별합	대중교통 인별합계금액					
인별합계금역	객	1,010,710				

1.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직계존비속·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30%)(직불카드 거래 중 후불교통사용금액 등 일정 기간 경과 후 카드사에 대금을 납부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분류됨)

2.공제한도: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

